

안산시 화정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안

의안 번호	1395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05. 11. .

제 출 자 : 안 산 시 장

제안이유

- 청소년들에게 영어권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안산시 화정 영어마을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임

주요골자

- 가. 영어마을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(안 제1조 내지 제3조)
- 나. 영어마을의 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4조)
- 다. 영어마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(안 제5조)
- 라. 영어마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위탁에 따른 위탁사무 및 수탁자의 의무를 규정함(안 제6조, 제7조)
- 마. 영어마을 운영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안산시 화정영어마을 운영위원회 구성 및 기능을 규정함(안 제10조, 제11조)

제정 조례안 : 별첨

관계법령발췌서 : 별첨

- 지방자치법 제8조, 제9조 및 제15조

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없음

예산수반사항 : 19억원(영어마을 조성 예산)

사전예고결과 : 의견없음

- 입법예고기간 : 2005. 10. 7 - 2005. 10. 27(20일간)

기타 참고사항 : 해당없음

안산시 화정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안

제 1 장 총 칙

제1조 (목적) 이 조례는 청소년들이 영어권 문화 및 생활 체험을 통한 영어를 즐겁고 재미있게 습득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안산시 화정영어마을(이하 “영어마을”이라 한다)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위치) 영어마을은 안산시 단원구 화정동 519번지에 둔다.

제 2 장 영어마을

제3조 (시설 및 운영) ①영어마을 시설은 교육공간, 문화·생활체험공간, 기타 시설로 구성한다.

②영어마을은 강의식 교육 형태의 프로그램은 지양하고 실용형 체험위주로 운영한다.

제4조 (사업) 영어마을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영어마을의 관리 및 운영
2. 영어마을 사업의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
3. 영어평생교육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학습프로그램의 개발 및 공급
4. 영어평생교육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시장 또는 교육장이 요구하는 교육 위탁사업
5. 기타 영어마을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

제5조 (위탁운영) ①시장은 영어마을의 관리 운영을 영어전문기관 또는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②위탁의 절차, 방법등 필요한 사항은 「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」를 준용한다.

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, 안산시화정영어마을운영위원회의 실적 평가등 심의를 거쳐 당초 위탁기간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.

④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탁자에게 영어마을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6조 (위탁사무의 범위) ①수탁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추진한다.

1. 영어마을 프로그램 운영, 운영인력 확보, 시설 유지 관리 및 홈페이지 구축 운영
2. 수익사업, 대외 협력사업, 관련분야 연구 조사
3. 기타 영어마을 운영과 관련된 사업

제7조 (수탁자의 의무) ①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중 제6조 규정에 의한 사무를 성실히 수행 하여야 한다.

②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 수탁받은 모든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

③수탁자는 위탁운영시설 등을 임의 변경할 수 없으며, 시설 훼손 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.

④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의 규정을 준수 하여야 하며, 위탁받은 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법인이나 단체, 개인에게 재 위탁하여 운영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.

⑤수탁자는 다음 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9월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⑥수탁자는 매 사업연도의 세입·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8조 (지도감독) ①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어마을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지도·감독하게 할 수 있다.

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지도·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, 수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.

제9조 (위탁의 취소)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.

1. 수탁자가 제7조 규정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
2. 영어 전문기관으로서의 자격을 상실 하였을 때
3.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정 및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
4. 공익 또는 기타 사유로 위탁운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

②시장은 위탁을 취소할 경우 수탁자로 하여금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

③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부대시설과 장비 및 비품 등을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.

제 3 장 운영위원회

제10조 (설치 및 구성) ① 영어마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산시 화정영어마을운영위원회(이하 “운영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구성하며,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.

③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, 영어마을 업무담당국장이 되고, 위촉직 위원은 안산시교육청 국장 또는 과장, 안산시의회 의원, 영어교육관련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.

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.

⑤ 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,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, 서기는 업무담당주사로 한다.

제11조 (기능)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영어마을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
2. 영어마을 운영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
3. 기타 영어마을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

제12조 (임기)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. 다만 직위를 정하여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.

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

제13조 (회의) ① 회의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른다.

③ 서기는 회의 종료후 그 내용을 회의록으로 작성,관리하여야 한다.

제14조 (실비변상) 위원회의 위원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「안산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 참석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5조 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과		체육청소년과
입 안 자	실과장 직위·성명	체육청소년과장 민 화 식
	담당·팀장 직위·성명	청소년담당 문 양 교
	담당자 성명·전화	김 숙 주 (행정 2219)

□ 지방자치법령 발췌문

- 제8조 (사무처리의 기본원칙) ①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주민의 편의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 - ②지방자치단체는 조직 및 운영의 합리화에 노력하고 그 규모의 적정화를 도모하여야 한다.
 - ③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반하여 그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.

- 제9조 (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) ①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 -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호와 같다.
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<개정 1995.12.29, 1999.2.8>
 - 1.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
 - 가.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
 - 나. 사회복지시설의 설치·운영 및 관리
 - 다. 생활곤궁자의 보호 및 지원
 - 라. 노인·아동·심신장애자·청소년 및 부녀의 보호와 복지증진
 - 마. 보건진료기관의 설치·운영
 - 바. 전염병 및 기타 질병의 예방과 방역
 - 사. 묘지·화장장 및 납골당의 운영·관리
 - 아. 공중접객업소의 위생개선을 위한 지도
 - 자. 청소, 오물의 수거 및 처리
 - 차.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

- 제15조 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안산시 화정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1395
----------	------

제안년월일 : 2005. 11. 9.

제안자 : 경제·사회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안산시 화정영어마을의 수탁자에 대한 재 위탁기간을 한정하여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.

2. 주요 골자

- 제5조제3항 중 화정영어마을의 위탁기간 연장 내용을 1회에 한하여 재 위탁할 수 있는 내용으로 수정함.(안 제5조)
- 제10조제3항 중 “국장 또는 과장”을 “담당국장”으로 수정함.(안 제10조)

안산시 화정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안산시 화정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5조제3항 중 “당초 위탁기간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”를 “1회에 한하여 재 위탁할 수 있다”로 한다.

제10조제3항 중 “국장 또는 과장”을 “담당국장”으로 한다.

조 문 대 비 표

원 안	수 정 안
<p>제5조 (위탁운영) ①~② (생략)</p> <p>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, 안산시화정영어마을운영위원회의 실적 평가등 심의를 거쳐 <u>당초 위탁기간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.</u></p> <p>제10조 (설치 및 구성) ①~② (생략)</p> <p>③당연직 위원은 부시장, 영어마을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, 위촉직 위원은 안산시교육청 <u>국장 또는 과장</u>, 안산시의회 의원, 영어교육 관련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.</p>	<p>제5조 (위탁운영) ①~② (원안과 같음)</p> <p>③..... <u>1회에 한하여 재 위탁할 수 있다.</u></p> <p>제10조 (설치 및 구성) ①~② (원안과 같음)</p> <p>③..... <u>담당국장</u>.....</p>